

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.



교육부

수신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
(경유)

제목 코로나19 관련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실습 과목 운영 안내

1. 관련

- 가. 「평생교육법」 제24조제25조
- 나.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-7359(2020.9.4.)

2.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코로나19 대비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실습 과목 운영 관련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,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및 실습기관 등 관련기관에 안내 및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코로나19 관련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실습 과목 운영 안내 1부. 끝.

교육부장관



주무관

현주나

행정사무관

우준성

평생학습정책과장

전결 08/30

이혜진

협조자

시행 평생학습정책과-2042 (2021.08.30.) 접수 자격·연수센터-1051 (2021.08.30.)
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, 정부세종청사 14동 / <https://www.moe.go.kr>
교육부 (어진동)

전화 044-203-6385 전송 044-203-6968 / wnsk0303@korea.kr / 부분공개

코로나19 관련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실습 과목 운영 안내

< '21.8,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>

□ 코로나19 대비 평생교육실습 운영 기준

- (개편방향) 코로나-19 대비 평생교육실습 비대면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여 코로나-19 감염 및 확산을 방지하고, 평생교육 현장실습 애로사항을 해소
- (적용기간) 2021.9.1.~별도 공지 시까지

구분	기 존('20.9월)	개 편 후('21.9월)
평생교육사 양성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실습 오리엔테이션, 실습세미나 등 사전교육 및 보고·평가 등을 온라인 교육으로 운영 가능 ▪ 실습지도 교수의 실습기관 방문 지도·점검을 원격으로 실시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실습 오리엔테이션, 실습세미나 등 사전교육 등을 온라인 교육으로 운영 가능 ▪ 실습기관 방문 지도·점검 원격으로 실시 가능 - <u>현장실습 방문지도 확인서에 원격 점검 계획 및 방법 포함하여 작성</u>
평생교육사 현장실습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실습지도자의 판단 및 기관 운영 상황에 따라 현장실습(4주 이상, 최소 20일, 총 160시간)을 50% 이내의 범위에서 원격 지도를 통한 비대면 실습으로 운영 가능 ▪ 비대면 실습 운영 시 실습계획서, 실습일지, 실습지도기록서,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에 해당 내용을 기록 ▪ 비대면 실습 운영시 실습지도자 1명당 실습생 10명 지도 가능(대면 실습은 5명 이내로 지도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50% 이내의 범위에서 원격 지도를 통한 비대면 실습 운영 가능 - <u>코로나-19 관련 확진자 또는 자가 격리 대상자는 치료 및 격리기간에 한해 50% 초과하여 비대면 실습 운영 가능(증빙 필수)</u> ▪ 비대면 실습 운영 시 평생교육 현장 실습 평가서에 해당 내용을 기록 ▪ 비대면 실습 운영 시 실습지도자 1명당 실습생 10명 지도 - 단, 대면 실습은 5명 이내로 지도 가능하며, 코로나-19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코로나-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교육과정을 운영 ▪ 현장실습 방문지도 및 현장실습을 원격으로 실시할 경우 전화, SNS, 원격화상회의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,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실시 내역을 입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코로나-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교육과정을 운영 ▪ <u>온라인 교육 운영은 동영상과 실시간 온라인 교육 모두 활용 가능</u> ▪ 비대면 현장실습 운영은 영상통화, SNS, 원격화상회의시스템 등을 모두 활용하여 지도 가능 - <u>실습 지도 방법은 실습계획서, 실습 일지 및 실습지도기록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증빙</u>